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21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원택・문금주・정동영

임호선 • 이춘석 • 김윤덕

유준병 • 이건태 • 문대림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 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 잠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 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포획방법·채취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적기에 채취할 필요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용 호흡보조장치(이하 "잠수장비"라고한다)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정해진 어업구역을 벗어나서 어업을 한 경우
- 2. 정해진 어업기간이 아닌 때에 어업을 한 경우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절차 및 승인취소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업권자가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잠수장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112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잠수장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설> 제7조의2(포획방법・채취 방법에 판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적기에 채취할 필요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용 호흡보조장치(이하 "잠수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해진 어업구역을 벗어나서어업을 한 경우 2. 정해진 어업기간이 아닌 때에 어업을 한 경우 3. 그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포획방법·채취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적기에 채취할 필요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용 호흡보조장치(이하 "잠수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한다. 1. 정해진 어업구역을 벗어나서 어업을 한 경우 2. 정해진 어업기간이 아닌 때에 어업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 전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는 사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6. (생 략)

 제112조(과태료) ①·② (생 략)

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
인의 방법·절차 및 승인취소
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세34조(면허어업의 취소)
1. (현행과 같음)
1의2. 어업권자가 제7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잠수장비 사용
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업
<u>을 한 경우</u>
2. ~ 6. (현행과 같음)
에11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생략) 2. ~ 13. (생 략)
- ④·⑤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
 -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잠수 장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잠수장비를 사용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 한 자
 -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1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